

전임교원벤처기업창업규정

개정 2025. 5. 1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교 교원이 창업관련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창업지원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② "교원창업"이라 함은 본교 교원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대학기술"이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내·외에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학기술"이라 함은 본교 지식재산관리규정 제2조 제2호의 지식재산권으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고, 교원창업자가 발명자로 되어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④ "창업기업"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거 교원창업자가 창업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⑤ "교원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종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한 본교 교원을 말한다.

⑥ "창업허가기간"이라 함은 교원창업자가 창업기업이나 재창업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창업준비기간 및 개점휴업기간도 포함된다.

⑦ "기술이전"이라 함은 본교 지식재산관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의거하여 본교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권리양도, 노하우 이전 및 전수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⑧ "교원창업허가에따른협약"이라 함은 본교와 교원창업자가 교원창업에 대한 창업대상기술, 창업허가기간, 창업자의 의무 등을 협의하고 교원창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창업의 유형) ① 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교원창업자는 대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허가에따른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대상 기술의 요건) ① 창업 대상 기술은 교원창업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유관한 분야의 기술이어야 하며 국내외의 산업체재산권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이어야 한다.

② 창업대상기술에는 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 중 참여기업이 산업화를 승인하였거나 참여기업에 소유권이 없는 기술 또는 기업 참여 없이 개발한 기술을 포함한다.

제6조(창업신청의 자격) ① 창업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에 한한다. 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사업성 및 기술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비전임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7조(창업신청) ①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원)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
2. 기술사업계획서
3.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서
4. 창업대상기술설명서, 주주명부(안), 개인정보수집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산학협력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② 소속 대학(원)장은 신청 교원의 창업을 추천할 경우 교육, 연구 또는 부설연구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허가 절차 및 선정기준)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교원의 소속 대학(원)에 통보한다.

1. 본 규정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
2. (필요시) 외부 실무평가위원의 사업계획서 실무평가
3. 운영위원회 심의
4. 총장 최종 허가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원창업자 또는 소속 대학(원)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원창업자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대학기술을 근거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발명예정인 경우는 산학협력단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창업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본교 발전에의 기여 여부
4. 기타 사항

제9조(허가에 따른 협약) 본 규정 제8조에 의해 허가 받은 교원창업자는 총장 결재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 창업 허가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기술
2. 창업허가기간
3. 기타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원창업자의 의무) ① 창업 허가를 득한 교원창업자는 교원창업허가에 따른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개업일 기준)을 완료하고 산학협력단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제2항은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 주주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허가기간 내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적용된다.

④ 교원창업자는 창업관련 신상 변동사항은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1주전까지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교원창업자는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겸직허가) ① 창업 허가를 득한 교원창업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라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전임교원대외기관겸직및출강에관한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휴직허가) 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교원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최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직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 제42조,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6조에 따른다.

제13조(창업허가기간) ① 창업기업의 창업허가기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허가를 받아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존 허가받은 창업기간 내에 폐업할 시 창업허가기간은 폐업일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창업허가 및 겸직, 휴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사항을 주관부서에 통지하며, 창업허가 및 겸직과 휴직을 취소한다.

1. 허가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교원창업허가에 따른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본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 은닉하여 본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와 이 규정이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6. 본교 전임교원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총장이 창업허가 및 겸직과 휴직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창업허가, 겸직 또는 휴직이 취소된 교원은 창업기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중지 및 사업장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기업 주식 기증) ① 교원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개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의 보통주식 5%를 산학협력단에 기증하여야 한다.

②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주식 기증분의 합이 창업기업 설립 자본금의 5%가 되도록 한다.

③ 창업기업의 설립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증자 시점을 기준으로 1억원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가로 기증하여야 한다.

④ 교원창업기업이 창업 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제3항의 적용 여부와 양도가액은 별도로 정하며, 기존 지분은 기술지주회사에 유상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교원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1. 주식증여계약서

2. 주주명부

3. 주식증여증서

4. 주권 미발행 확인서

5. 법인인감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기타 산학협력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⑥ 제2항 제2호의 주주명부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그 주주명부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및 매각될 경우 교원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 양도, 실시허락 등 제반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창업기업의 산학협력단 주식 기증분의 지분율 및 주식 가치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교원창업자는 이를 변동 발생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17조(징계요청) 창업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사안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14조(창업허가 및 겸직, 휴직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본교 제 규정과 정관, 기타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18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내용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